

公害防止시설 투자 에 대한 租稅감면 제도

公害防止시설에 대한 투자,
이렇게하면 租稅를 감면 받을수 있다

투자금액이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완료한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環境廳부산지구점점반
반장 차 승 환

1. 배경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산업공정상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기업 등에서 범국민적으로 경주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공해방지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특정 설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 감면제도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공해방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공해방지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조세감면 대상시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은 <표-1>과 같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등이다. (법

<표-1> 조세감면 대상 공해방지시설

구 분	적 용 범 위
1. 탈유황장치 집진시설및 폐가스처리 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가스·먼지, 매연, 악취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폐수처리 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3. 소음, 진동 방지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 또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5. 폐유처리 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 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유처리시설

제 71 조 제 1 항 동시행령 제 57 호 제 1 항, 동시행규칙 제 21 조 제 2 항 [별표 3])

3. 조세감면내용

위 <표-1>의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 제 18조제 1 항)

1) 세액공제방법

공해방지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특별감가상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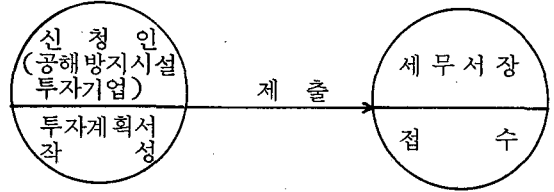
공해방지시설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공해방지시설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4. 조세감면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업은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에 소정의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 57조 제 2 항)

1) 투자개시 과세년도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동시행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의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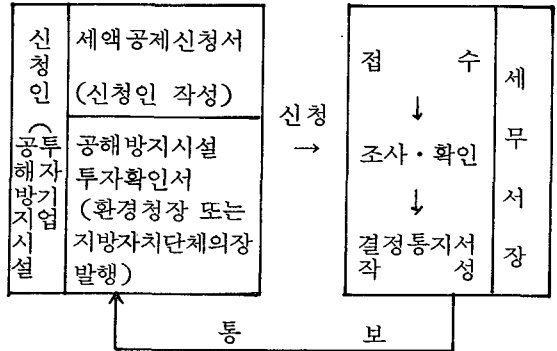


<그림-1> 투자개시 과세년도의 처리절차

2) 투자완료 과세년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동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의 세액 공제 신고서에 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공해방지시설 투자기업)이 소정의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그림-2> 투자완료 과세년도의 처리절차 *

주소 변경시는 꼭 알려주십시오.

회원·회원사·명예회원 및 협회보나 명예회원보를 받아보시는 여러분께선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본협회 회무과에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의 12층
(지방의 경우 본협회지부에 연락)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